
『정부3.0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구축 및 운영』 연계기관 업무 협약서

행정자치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및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정부3.0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피해구제 시스템의 원활한 연계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서는 「정부3.0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함에 있어 참여 기관간의 상호 연계 협약을 통해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협약당사자) 협약의 당사자는 행정자치부 협업행정과장,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종합지원팀장, 한국콘텐츠진흥원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으로 한다.

제3조(협약내용) ① 상호기관은 협력 업무에 대한 목적을 정확히 이해하고 효율적인 시스템 연계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상호 협력한다.

1.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해 인입된 한국콘텐츠진흥원 소관 상담 또는 피해 구제신청 건에 대한 처리
2. 각종 신청 서식 등 주요 자료 또는 정보의 원활한 제공 및 최신성 유지
3. 그 밖에 기관 간 시스템 연계체계 구축 및 운영과 관련된 제반 행정사항

② 협약 기관 간 협의를 통해 제공된 자료 또는 정보는 당초 협의한 업무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특별한 사유 발생 시에는 별도로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협약서 해석) 본 협약서 해석에 있어 상호간에 이견이 발생하거나, 본 협약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협약 당사자 간에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제5조(변경) 협약기관은 업무에 대하여 협약 변경 사항 등이 발생할 경우, 상호 합의하여 본 협약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효력발생 및 소멸) 본 협약은 서명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고, 별도의 종료 합의가 있을 때까지 지속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정부3.0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추진함에 있어서 상기 협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행정자치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협약사항 이행을 적극 지원한다.

2016년 10월 20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대행

소비자종합지원팀장

성명 정보름

서명 

행정자치부 장관

대행

협업행정과장

성명 서주현

서명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대행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

성명 이기현

서명 